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20호 2021. 4. 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43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4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74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746호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747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748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7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 28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430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 사천시 공고 제448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2
- 사천시 공고 제449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9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174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행정
과장 및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174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과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17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희생·공헌자” 라 함은” 을 “ “희생·공헌자” 란” 으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의” 를 “대한민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을 “ “국가보훈대상자”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을 “ “국가보
훈관계 법령” 이란” 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제6조의 제목 “(단체 예산지원)” 을 “(단체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을 “시설건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순례비 등 지원” 을 “순례”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비 지원” 을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 지원” 을 “사업”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 을 “(복지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창달” 을 “발전” 으로 한다.

제9조 중 “창달” 을 “발전” 으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를 “관계기관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만원” 을 “5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고” 를 “한정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 를 “시” 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일로부터” 를 “신청일부터” 로, “이내” 를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이내에” 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을 “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17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건축·사적·무형·동산의 분야별로 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또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는 녹화할 수 있다.

④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비공개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2.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향토문화유산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사천시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제15조(고시)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천시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문화유산 또는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주소, 성명
3. 향토무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6조(관리주체)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존·관리) 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점검·기록)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보조)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4. 1.>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 명 칭 :
- 위 치 (장소) :
-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 :
- 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형	태	구	조	규	격 크기
제	작 연 대	토 지 면 적	m ²	기	타
작	자	건 축 면 적	m ²		
지	정 사 유				
소	유자(보유자)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 연 혁(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 사진첨부

위와 같이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1.>

(앞면)

제 호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수 량

소 재 지

위를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	기 록 인

변 경 사 항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4. 1.>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명 칭	③ 지정 번호	④ 지정 연월일	⑤ 수 량	⑥ 소재지 또는 보장 소	소 유 자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비고
						⑦ 주소	⑧ 생년 월일 (성별)			
							⑨성명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4. 1.>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성별)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성별)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 자	내 용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향토문화유산명 :		사 진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 실 측 도



() 위 치 도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17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장범위)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사망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험금 신청)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조례 제174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를 “사천시” 로,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
다)”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표 2] <개정 2021. 4.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원)

업종	구간(m ³)	2021년 4월 고지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1~20	782	931	1,108	1,319
	21~30	782	931	1,108	1,319
	31 이상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용	1~500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m ³ 당	808	962	1,145	1,363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고시 제2021 - 7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 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1. 산업단지 명칭

- 명 칭: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2.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및 대동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와의 연계를 위한 진입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 규 모: 7,538㎡
 - 중로1-56호선 (L=235m, B=20m)
 - 소로1-2호선 (접속구간 L=140m, B=10~20m)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4.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승인 고시일 ~ 2022. 12. 31.
-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분	계	답	임	창	구	도
필지수	37	11	3	3	2	18
면적(m ²)	7,538	2,982	497	1,698	421	1,940
구성비(%)	100.0	39.6	6.6	22.5	5.6	25.7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 재정부	사천시	
필지수	37	21	13	1	1	6	16
면적(m ²)	7,538	2,631	1,571	412	117	531	4,907
구성비(%)	100.0	34.9	20.8	5.5	1.6	7.0	65.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7,538	100.0	
중로1-56호선	5,162	68.5	
소로1-2호선(일부구간)	2,376	31.5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2021.01.14. (사천2021-22)	
변경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일부구간선형변경
기정	소로	1	2	10~30.5	집산도로	10,956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2011.07.28. (사천2011-89)	
변경	소로	1	2	10~30.5 (10~20)	집산도로	10,956 (140)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일부구간확폭 (10.0m→10.0m~20.0m)

※ ()는 산업단지의 사업(주진입도로)내의 구간임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3,000,000천원은 주식회사 장원에서 조달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량(m ²)	사업비(천원)		
		계	2021년	2022년
주진입도로	7,538	3,000,000	2,000,000	1,000,0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 사천시 귀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사천시귀속면적	7,538	100.0	-
중로1-56호선	5,162	68.5	사천시귀속
소로1-2호선 (일부구간)	2,376	31.5	사천시귀속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2021.01.14. (사천2021-22)	
변경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일부구간선형변경
기정	소로	1	2	10~30.5	집산도로	10,956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2011.07.28. (사천2011-89)	
변경	소로	1	2	10~30.5 (10~20)	집산도로	10,956 (140)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일부구간확폭 (10.0m→10.0m~20.0m)

※ ()는 산업단지의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6호선	중로1-56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및 대동일반 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와의 연계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자 함
소로1-2호선	소로1-2호선	일부구간확폭 (10.0m→10.0m~20.0m)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축동 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2021.01.14. (사천2021-22)	
변경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35 (235)	소로1-2	중로1-42	일반도로			일부구간선형변경
기정	소로	1	2	10~30.5	집산도로	10,956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2011.07.28. (사천2011-89)	
변경	소로	1	2	10~30.5 (10~20)	집산도로	10,956 (140)	중로1-7	축동면구역계	일반도로	대로2-1		일부구간확폭 (10.0m→10.0m~20.0m)

※ ()는 산업단지의 사업(진입도로)내의 구간임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6호선	중로1-56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및 대동일반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와의 연계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소로1-2호선	소로1-2호선	일부구간확폭 (10.0m→10.0m~20.0m)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주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1-56호선	L=235m, B=20m, A=5,162m ²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1-2호선	L=140m, B=10~20m, A=2,376m ²	일부구간 노폭확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사천시장
-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붙임>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축동면 사다리	214-3	도	3,269	57	국(국토교통부)				
2	축동면 사다리	214-5	답	882	404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축동면 사다리	214-6	답	453	453	최*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웃***길 **	손*안	울산광역시 *구 강북로 123, ***동 ****호(**동,***역**읍)	가등기
4	축동면 사다리	214-7	답	475	218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5	축동면 사다리	214-8	답	261	261	최*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웃***길 **	손*안	울산광역시 *구 강북로 123, ***동 ****호(**동,***역**읍)	가등기
6	축동면 사다리	215-1	답	697	340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7	축동면 사다리	215-2	답	40	40	최*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웃***길 **	손*안	울산광역시 *구 강북로 123, ***동 ****호(**동,***역**읍)	가등기
8	축동면 사다리	216-1	답	786	687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9	축동면 사다리	216-2	답	14	14	최*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웃***길 **	손*안	울산광역시 *구 강북로 123, ***동 ****호(**동,***역**읍)	가등기
10	축동면 사다리	217-6	답	1,532	286	정*녀	***-1			
11	축동면 사다리	247-19	도	168	23	국(국토교통부)				
12	축동면 사다리	249-1	답	162	162	국(국토교통부)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축동면 사다리	249-5	답	156	117	국(기획재정부)				
14	축동면 사다리	250	창	153	59	정*녀	***-1			
15	축동면 사다리	250-2	도	189	185	사천시				
16	축동면 사다리	250-4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17	축동면 사다리	250-6	도	433	265	국(국토교통부)				
18	축동면 사다리	250-7	도	229	229	국(국토교통부)				
19	축동면 사다리	250-8	창	1,380	1,063	정*녀	***-1			
20	축동면 사다리	250-9	창	677	576	정*녀	***-1			
21	축동면 사다리	250-10	도	5	5	국(국토교통부)				
22	축동면 사다리	251-2	구	26	9	정*조	**1			
23	축동면 사다리	252-6	도	8,341	83	국(국토교통부)				
24	축동면 사다리	387-18	도	28	28	사천시				
25	축동면 사다리	387-19	도	367	124	사천시				
26	축동면 사다리	387-21	도	220	14	사천시				
27	축동면 사다리	387-22	도	246	8	사천시				
28	축동면 사다리	387-33	도	261	172	사천시				
29	축동면 사다리	387-34	도	6	6	국(국토교통부)				
30	축동면 사다리	1052-18	구	581	412	국(국토교통부)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1	축동면 사다리	1057	도	227	33	국(국토교통부)				
32	축동면 사다리	1057-2	도	623	269	국(국토교통부)				
33	축동면 사다리	산20-7	임	1,893	291	이*규	부산 *구 **동2가 **1	국(서부산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국(중부산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영남신용관리지원단)	가압류
34	축동면 사다리	산20-21	임	1	1	이*규	부산 *구 **동2가 **1	국(서부산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국(중부산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영남신용관리지원단)	가압류
35	축동면 사다리	산20-22	임	859	205	이*규	부산 *구 **동2가 **1	국(서부산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국(중부산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영남신용관리지원단)	가압류
36	축동면 사다리	산32-21	도	158	114	국(국토교통부)				
37	축동면 사다리	산32-14	도	298	288	국(국토교통부)				
합계				26,133	7,538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공고 제2021- 430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20.12.8.) 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 “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차.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사천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사 천 시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사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
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관 련 법 규

도로명주소법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공고 제2021-448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설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설장례식장 사용료 및 자연장지 관리비 신설(안 제6조제1항 별표 1)
- 봉안당 사용료 환불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장사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 규정 신설(안 제13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91, FAX : 831-6112)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시설(이하 각각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시설”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 가. 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 나. 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소에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공설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중 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장례식장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분묘 및 묘비,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장례에 사용되는 음식 및 물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관내 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인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부부단 및 가족장지 이용 시 사용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만 100세 이상인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봉안당을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봉안당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골의 인도)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사 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제3장 화장시설·유택동산

제15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 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봉안당

제1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기(부부 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5년으로 한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다.

제18조(사용방법) ①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한다.

②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다.

④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단은 사용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폐하지 않는다.

제5장 자연장지

제19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사용대상) ① 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 구역 또는 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시설기준 등)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장례식장

제22조(장례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식당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탈의실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장 묘지

제23조(관리) 묘지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천읍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사용자격 등) ① 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분묘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② 사용권자는 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25조(면적의 제한) ① 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제26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권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기준 등) 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묘지 등의 설치

제28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표 1]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1항 관련)

1. 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5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3회 연장 가능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5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분묘

* 관내 및 관외의 구분은 최초안치일 기준으로 하고, 2기의 주소가 각각 관내 및 관외로 다를 경우의 사용료는 각각 1기 기준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봉안당 사용료 환불기준

안치 기간	환급률	안치 기간	환급률	비고
6개월 이하	75%	7년 초과~8년 이하	35%	
6개월 초과~1년 이하	70%	8년 초과~9년 이하	30%	
1년 초과~2년 이하	65%	9년 초과~10년 이하	25%	
2년 초과~3년 이하	60%	10년 초과~11년 이하	20%	
3년 초과~4년 이하	55%	11년 초과~12년 이하	15%	
4년 초과~5년 이하	50%	12년 초과~13년 이하	12%	
5년 초과~6년 이하	45%	13년 초과~14년 이하	10%	
6년 초과~7년 이하	40%	14년 초과~15년 이하	0%	

사 천 시 공 보

제 720 호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m ²)	사용료(원)	관리비(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100,000	-사용료 및 관리비 : 30년 기준 - 1회연장 가능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2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4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600,000	

5. 장례식장

구분	단위	사 용 료(원)		비고
		관 내	관 외	
분 향 실	1m ² 당(1일)	2,200	3,000	분향1실(97m ²) 분향2실(102m ²) 분향3실(116m ²) 분향4실(128m ²)
안 치 실	1일	50,000	100,000	
염 습 실	1회	150,000	200,000	
염 습 료	1회	200,000	200,000	
발 인 실	1회	50,000	100,000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4항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관 련 법 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불안시설)

불안요, 불안당, 불안탐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불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년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불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함.(예 : 소비자가 불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공고 제2021-449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91, FAX : 831-6112)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같은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5조”로, “잡수입으로 세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8조 중 “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신고) 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u>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u>같은 조례</u>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u>조례 제18조</u>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u>잡수입으로 세입</u> 조치한다.</p> <p>② (생략)</p> <p>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p>	<p>제2조(사용신고) ①----- ----- ----- ----- ----- <u>사</u> <u>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 <u>조례</u> ----- ----- -----.</p> <p>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 <u>제15조</u>----- ----- ----- ----- ----- ----- <u>세입</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p>

<p>조례 <u>제17조</u>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p> <p>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u>제24조</u>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p>	<p>--- <u>제27조</u>-----</p> <p>-----.</p> <p>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 <u>제21조</u>-----</p> <p>-----</p> <p>-----.</p>
---	--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2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사 망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내 용	신고시설				신고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최초 /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최초 / 1회 연장)		
	공설장례식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당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4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신 고 사 항	사용권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년간)
	실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5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별지 제6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인 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20호

관 련 법 규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시설기준 등)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기준 등)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